

부산지방법원 2023. 7. 11 선고 2022가단348635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24. 7. 24 선고 2023나58022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7. 11 선고 2022가단348635 판결

전문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춘하

피고1. B

2. 주식회사 C

3. D

4. E

5. F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찬호

변론 종결 2023. 6. 13.

판결 선고 2023. 7. 11.

주문

1.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가. 주식회사 G과 피고 B 사이에 2021. 12. 6. 체결한 자동차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10,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가. 주식회사 G과 피고 B 사이에 2021. 12. 6. 체결한 자동차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B은 주식회사 G에게 위 자동차에 관하여 부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 2021. 12. 6. 접수 H로 마친 명의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3. 별지 목록 순번 3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가. 주식회사 G과 피고 B 사이에 2021. 12. 6. 체결한 자동차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B은 주식회사 G에게 위 자동차에 관하여 부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 2021. 12. 6. 접수 I로 마친 명의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4. 별지 목록 순번 4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가. 주식회사 G과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2022. 9. 28. 체결한 자동차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C는 주식회사 G에게 위 자동차에 관하여 부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 2022. 9. 28. 접수 J로 마친 명의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5. 별지 목록 순번 5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가. 주식회사 G과 피고 D 사이에 2021. 12. 6. 체결한 자동차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D은 주식회사 G에게 위 자동차에 관하여 부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 2021. 12. 6. 접수 K로 마친 명의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6. 별지 목록 순번 6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가. 주식회사 G과 피고 D 사이에 2021. 12. 8. 체결한 자동차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D은 원고에게 15,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7. 별지 목록 순번 7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가. 주식회사 G과 피고 E 사이에 2021. 10. 26. 체결한 자동차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E은 주식회사 G에게 위 자동차에 관하여 부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 2021. 10. 26. 접수

L로 마친 명의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8. 별지 목록 순번 8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가. 주식회사 G과 피고 F 사이에 2021. 9. 16. 체결한 자동차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F은 원고에게 21,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9.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어음 취득 경위

1)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는 2021. 9. 2.부터 2021. 11. 18.까지 아래와 같은 11개의
전자어음을 발생하였다.

1) 액면금 : 20,000,000원

어음번호: M 어음번호 : N

발행인 : 주식회사 G

발행일 : 2021. 9. 2.

지급기일 : 2021. 12. 2.

지급장소 : (주) ○ 가야동지점

2) 액면금 : 61,000,000원

발행인 : 주식회사 G

발행일 : 2021. 9. 9.

지급기일 : 2021. 12. 9.

지급장소 : (주) ○ 가야동지점

3) 액면금 : 30,000,000원

어음번호: P 어음번호: Q

발행인 : 주식회사 G

발행일 : 2021. 9. 16.

지급기일 : 2021. 12. 16.

지급장소 : (주) ○ 가야동지점

4) 액면금 : 18,000,000원

발행인 : 주식회사 G

발행일 : 2021. 9. 27.

지급기일 : 2021. 12. 27.

지급장소: (주) ○ 가야동지점

5) 액면금 : 35,000,000원

어음번호: R 어음번호: S

발행인 : 주식회사 G

발행일 : 2021. 9. 27.

지급기일 : 2021. 12. 27.

지급장소 : (주) ○ 가야동지점

6) 액면금 : 4,000,000원

발행인 : 주식회사 G

발행일 : 2021. 9. 27.

지급기일 : 2021. 12. 27.

지급장소: (주) ○ 가야동지점

7) 액면금 : 40,000,000원

어음번호: T 어음번호: T

발행인 : 주식회사 G

발행일 : 2021. 10. 5.

지급기일 : 2022. 1. 5.

지급장소 : (주) ○ 가야동지점

8) 액면금 : 10,000,000원

발행인 : 주식회사 G

발행일 : 2021. 10. 5.

지급기일 : 2022. 1. 5.

지급장소: (주) ○ 가야동지점

9) 액면금 : 30,000,000원

어음번호 : U 어음번호 : V

발행인 : 주식회사 G

발행일 : 2021. 10. 8.

지급기일 : 2022. 1. 7.

지급장소 : (주) ○ 가야동지점

10) 액면금 : 57,000,000원

발행인 : 주식회사 G

발행일 : 2021. 11. 18.

지급기일 : 2022. 2. 18.

지급장소: (주) ○ 가야동지점

11) 액면금 : 10,000,000원

어음번호: V

발행인 : 주식회사 G

발행일 : 2021. 11. 18.

지급기일 : 2022. 2. 18.

지급장소 : (주) ○ 가야동지점

2) 주식회사 W(이하 'W'이라 한다)은 2021. 9. 2.부터 2021. 11. 18.까지 원고에게 위 각 어음들의 할인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21. 9. 3.부터 2021. 11. 19.까지 위 표의 어음 중 1) 내지 8), 10), 11)에 관하여는 W와 그 대표이사인 X의 배서를 받은 후, 어음 9)에 관하여는 W의 배서를 받은 후 할인해주었다.

3) 위 어음들의 소지인들이 2021. 12. 2.경부터 지급장소에 어음을 제시하였으나 G의 부도를 이유로 지급거절이 되었고 이후 원고가 일부 배서되어 이전된 어음을 회수하여 위 어음들을 모두 소지하고 있다.

나. G과 피고 B 사이의 거래

1) 피고 B은 2017. 3. 31.까지 G의 감사로 재직하였다.

2) G은 2021. 12. 6.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3 기재 자동차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그 명의이전등록을 마쳤다.

다. G과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의 거래

1)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의 사내이사 Y은 G의 대표이사 Z의 아들이다.

2) G은 2022. 9. 28. 피고 C에 별지 목록 순번 4 기재 자동차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C에 그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라. G과 피고 D 사이의 거래

1) G은 2021. 12. 6.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순번 5 기재 자동차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명의이전등록을 마쳤다.

2) G은 2021. 12. 8.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순번 6 기재 자동차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1. 12. 9. 그 이전등록을 마쳤다.

마. G과 피고 E 사이의 거래

- 1) 피고 E은 G의 사내이사이고, G의 대표이사인 Z의 처이다.
- 2) G은 2021. 10. 26. 피고 E에게 별지 목록 순번 7 기재 자동차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명의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바. G과 피고 F 사이의 거래

- 1) 피고 F은 G 대표이사 Z의 처조카이고, G과 주소지를 동일하게 사용하는 주식회사 AA의 사내이사이다.
- 2) G은 2021. 9. 16. 피고 F에게 별지 목록 순번 8 기재 자동차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11, 13 내지 1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G에 어음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G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데, G과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고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이나 가액배상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요지

- 1) 피고 B은 2019. 1. 7.경 G에게 7,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G이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3 기재 자동차를 양도받았다.
- 2) 피고 C는 G이 발행한 어음이 부도가 된 이후인 2022. 1.부터 별지 목록 순번 4 기재 자동차의 할부금을 납부하고 있다.
- 3) 피고 D은 2019. 2. 15. G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G이 피고 D에게 발행한 액면금 합계 6,798만 원의 어음이 부도처리되어서 그에 대한 변제로 별지 목록 순번 5, 6 기재 각 자동차를 양도받았다.
- 4) 피고 E은 2021. 5. 10.경 G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G이 변제하지 못하여 별지 목록 순번 7 기재 자동차를 양도받았다.
- 5) 피고 F은 2021. 9. 16. G에게 매매대금 1,100만 원을 지급하고 별지 목록 순번 8 기재 자동차를 매수하였다.

3.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원고가 G에게 합계 3억 1,5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G은 2021. 11. 22.경 어음이 지급거절되었고 그와 근접하거나 그 이후에 이루어진 G과 피고들 사이의 처분행위 당시 G이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B, D, E은 G에 대한 대여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자동차로 변제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므로(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8다295103 판결 등 참조), 위 피고들이 G으로부터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3, 5 내지 7 기재 각 자동차를 대물변제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3) 피고 C는 2022. 1.부터 별지 목록 순번 4 기재 자동차의 할부금을 납부하다가 자동차를 이전받았고, 피고 F은 1,100만 원을 지급하고 별지 목록 순번 8 기재 자동차를 매수하였으므로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C가 G 소유인 별지 목록 순번 4 기재 자동차의 할부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G에게 해당 할부금의 반환채권을 가질 뿐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근거로 위 자동차를 대물변제 받았다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피고 C의 사내이사 Y은 G 대표이사 Z의 아들이고, 피고 C는 G이 부도처리 된 이후부터 위 자동차에 대한 할부금을 대신 납부해주는 등 G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F이 양도받은 별지 목록 순번 8 기재 자동차의 가액이 2,190만 원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피고 F이 G이 위 자동차를 양도하면서 지급한 금액이 1,100만 원에 불과한 점, ④ 피고 F은 G 대표이사 Z의 처조카이고, G과 주소지를 동일하게 사용하는 주식회사 AA의 사내이사인바, G의 채무초과 상태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양도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C와 피고 F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보기 어렵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

- 1) 원고는 별지 목록 순번 2 내지 5, 7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하여 원물반환으로 명의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위 각 자동차의 명의이전등록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는데 장애가 있다고 불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 B, 피고 C, 피고 D, 피고 E은 양수한 각 자동차에 대한 명의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2) 원고는, 피고 B이 2021. 12. 6. 양수한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B이 양수한 이후에 김해중부경찰서에서 압류를 하였다는 이유로 가액반환을 구한다.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자동차의 가액이 1,080만 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자동차에는 저당권자가 AB 주식회사, 가액이 900만 원인 저당권이 존재하지만 AC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에 따르면 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2021. 3. 15. 모두 변제된 상태였으므로, 피고 B은 위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액 1,0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원고는, 피고 D이 2021. 12. 8. 양수한 별지 목록 순번 6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D이 양수한 이후에 위 자동차에 설정된 저당권의 채무액을 승계하였다는 이유로 가액반환을 구한다. 별지 목록 순번 6 기재 자동차의 가액이 5,760만 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AD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 결과에 따르면, 위 자동차에는 저당권자 AE 주식회사, 저당가액 4,200만 원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피고 D이 위 자동차를 양수하면서 승계한 채무액이 53,586,744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D은 자동차의 가액 5,760만 원에서 저당권의 최고액 4,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56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원고는, 피고 F이 2021. 9. 16. 양수한 별지 목록 순번 8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F이 양수한 이후 근저당을 설정하였다는 이유로 가액반환을 구한다. 별지 목록 순번 8 기재 자동차의 가액이 2,190만 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 F은 위 자동차를 양수한 2021. 9. 16. 저당권자 AF 주식회사, 가액 1,25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F은 원고에게 위 자동차의 가액 2,19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심우승

별지